주식회사 하이텍환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0로10번길5 전화(031)431-4850(代) 전송(031)431-4860 홈페이지 http://www.hyenv.co.kr

문서번호 HY-18-

시행일자 2018년 월 일

(경유)

수신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각		결재·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연구실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여부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인정되지 않은 연구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이행을 2019년까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은 사용 중인 시약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연구실의 설치 시점에 따라 2015년도 이전 설치 연구실의 경우 구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15년도 이후 설치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은 "연구실"의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취급시설 검사 등 자세한 사항은 ㈜하이텍환경 컨설팅사업부 장외영향평가팀(Tel. 031-431-485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주식회사 하이텍환경 대표이사 구경보